충청북도 체육인 복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노금식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 2024년 5월 29일

O 회부일자 : 2024년 5월 31일

3. 제정이유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인 복지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체육인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O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O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O 지원금 지급과 중지 및 환수에 관한 내용, 절차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O 자료제공의 요청,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5. 검토의견

가. 제정 필요성

-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 년에 체육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0 체육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체육인들의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미래 직업전망도가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결국 체육인의고용안정성 측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이후 국회에서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도 충청북도체육회와 각 체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체육인의 열악한 복지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었고, 「체육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체육인 복지정책을 지원할 조례제정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제도 기반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O 현재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체육인의 복지와 관련된 조

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 3곳뿐이며, 체육인 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없음(표-1 참조).

[표-1] 광역자치단체 체육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24.5.31.기준)

연번	시 · 도	조 례 명	제정일
1	경북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2023.05.25.
2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2024.02.16.
3	경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014.03.20.

○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는 상위 근거법인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충청북도 조례안과 대동소이함.

경기도의 조례는 앞의 2개 자치단체와 다소 결이 다르게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임(표-2 참조).

[표-2] 체육인 복지 관련 조례 3개 비교

(2024.5.31.기준)

구분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복지 조례	지급 조례
제정 이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

구분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문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 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 11개 조문	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 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 기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 12개 조문			
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 구성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6조(장학사업) 제7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8조(지원금) 제9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제6조(장학사업) 제7조(원로 체육인의 지원) 제8조(지원금)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재정지원)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사업평가) 제12조(사무의 위탁)			

나. 조례안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 체육인의 복지정책 수립과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하며, 이를통해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상위 근거법인「체육인 복지법」을 근간으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고있다고 판단 됨.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여 그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 별다 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3조는' 체육인 복지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체육인 복지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의무, 제2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안 제3조 제1항'의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태조사 결과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안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1호부터 4호는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조사·연구,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제5호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인 복지 향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O '안 제6조'는 학생선수 장학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 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조 례로 명시한 것으로 보임.
- O '안 제7조'는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등 을 특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의료비 등 특별 보조

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지급과 관련한 기준, 금액, 방법 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금 지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있다고 판단 됨.
- '안 제9조'는 '안 제7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게 지원되는 지원 금의 경우 「체육인 복지법」 제22조, 제23조의 사유가 발생하 면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금 지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 됨.
- '안 제10조'는 조례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본 조항의 자료요청으로 과도하고 중복되는 개인 정보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안 제11조'는 체육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12조'는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가 교육청,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체육인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체육인 복지법」(2021.8.10)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 정(2022.8.9.)·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체 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여 제정 된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본 조례 시행 시 지원 대상이 일부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충청북도 체육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마련과 지원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충청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끝.